

January 09, 2014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

–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소유 요건 완화

2014년 1월 1일 국회는 일반회사의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의 지분 취득 제한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며, 예외적으로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함)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분 100%를 소유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손자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 취득에 엄격한 제한을 둔 이유는 대기업의 지배력 확대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이러한 제한을 해소하지 않는 한 행정제재를 받을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2.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을 통한 손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지분 취득 완화

국회는 치열한 논의 끝에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i) 외국인과 공동출자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면서 (ii) 발행주식 중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이외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iii)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에서 (vi) 외국인이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공동출자한 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요컨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요건을 충족하면서 외국인 지분 30% 이상인 회사의 잔여 지분을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100% 지분 취득 요건의 예외를 허용한 것입니다.

이때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는 점에서는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지정되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과 동일하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역

을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참조). 예컨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그 지역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손자회사 지분 소유 요건 완화 관련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총 127개 사이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32개 사로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손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지분 취득 요건의 완화가 일반지주회사 체제를 규율하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아닌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 조치로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의 합작을 통해 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어 산업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체제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개정될 시행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장재영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350 | E-Mail. jychang@shinkim.com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630 | E-Mail. dybaek@shinkim.com |